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6-12-07 의회훈령 제 34호
(일부개정) 2012-07-27 의회훈령 제 62호
(일부개정) 2014-09-26 의회훈령 제 64호
(일부개정) 2015-08-21 의회훈령 제 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의에 따라 위원회의 안전심사 및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수당지급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21.>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특수 분야의 안전을 심사함에 있어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자문·지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활동 및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21.>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요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1.>

③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문위원의 위촉인원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2015.8.21.>

제3조(자격기준) 위원회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전문가는 해당 위원회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조건 “5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9.26., 2015.8.21.>

제4조(자문위원의 직무) ①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21.>

1. 특수분야·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 활동
2. 도 의회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문·지원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자료수집
4. 그 밖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식·정보교환 등

② 자문위원은 수입 받은 직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 3호의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1.>

③ 자문위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자문위원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15.8.21.>

③ 위원회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 ①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회의참석이나 위원회 활동 및 직무내용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급하되 지급금액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중 임기제공무원 “5급” 하한액과 그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상한액을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7., 2014.9.26.>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자료수집이나 현지 활동 등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액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1.>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이상 등으로 위촉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자문위원이 자진 사임하거나 위촉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

부칙(1999. 4.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7.)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27 의회훈령 제6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6 의회훈령 제6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21 의회훈령 제6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개정 2015. 8. 21>

자문위원 위촉 요청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 위촉을 요청합니다.

분 야 별						
대상업무					소지자격	
자문위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19 . . .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위촉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월)					
위촉이유						

※ 첨부서류

- 이력서
- 자격증사본
-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 (직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2]<개정 2015. 8. 21>

위촉기간 연장 요청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분 야 별						
대상업무				소지자격		
자문위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위촉기간	당 초	~		연 장	~	
연장사유						

년 월 일

○ ○ 위원회 위원장 (직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3]

보 고 서

대상업무 (안전)명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내 용	시기및장소

※ 직무성격에 따라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가능

년 월 일

○○위원회 자문위원 ○ ○ ○ (인)

○○○○위원회위원장 귀하